



# 양계산물 등급판정 기준 및 방법

## 1. 계란등급제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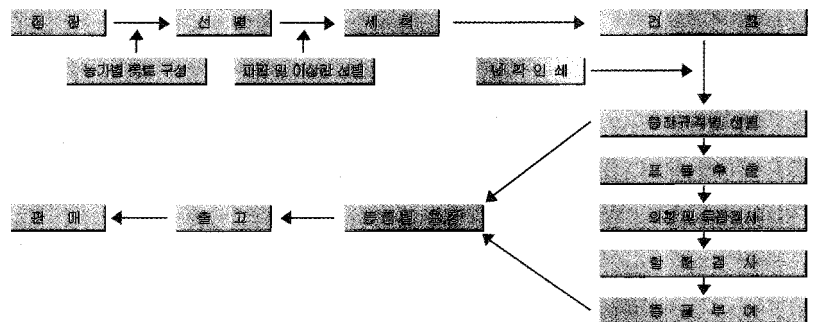
계란등급제란? 우리 식생활에 이용되는 계란의 크기와 내부품질을 정부가 공인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등급판정을 함으로써 계란유통을 공정하게 유도하여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에서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계란등급판정의 필요성은 품질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표시해 줌으로써 거래지표를 제공하고, 계란의 품질고급화를 통해 대외경쟁력을 높이며, 통일된 거래규격 확립으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대효과로는 계란에 품질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선택기준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의 생산·유통·소비체계를 확립할 수 있으며, 계란의 품질차별화로 농가의 소득증대 및 대외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동시에 계란 소비를 증가시켜 양계 및 관련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계란등급제는 농림부의 “계육과 계란의 품질등급 마련 및 검사제도 도입 검토요청”(축통 51554-404, '00. 05. 25)을 근거로 추진 되었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축산물 등급판정소 자문위원회에 산란계분과위원회('00. 10. 04)가 설치되었다. 또한 계란등급제 시행을 위한 축산법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를 하고 계란등급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후 계란 등급제의 세부기준(안) 마련하여 '01년 10월부터 시범실시를 하고 '02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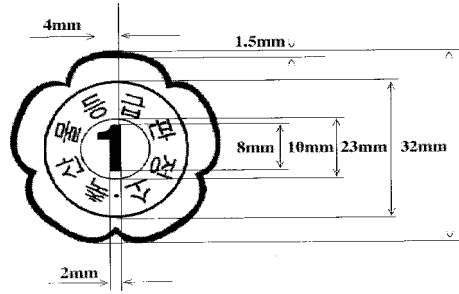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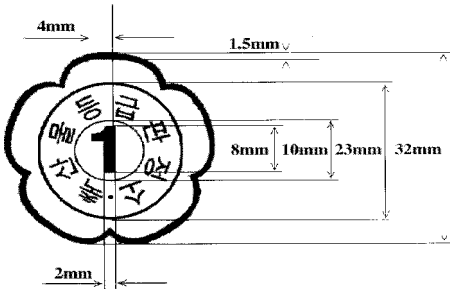
계란의 처리공정은 양계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계란집하장으로 운반하고, 출하농가별 품종 및 산란주령을 고려하여 선별작업을 실시한다. 선별과정에서 파란 및 이상란을 선별한 후 세척, 오일코팅, 건조작업을 하게 된다. 집하장에 따라 더운 여름철에는 세척, 오일코팅, 건조작업을 생략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중량규격별 선별작업이 이루어지면 표본추출율에 따라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외관 및 투광검사를 하고 또한 할란검사를 하여 종합적인 품질을 조사하여 룯트 전체에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부여한 등급에 따라 계란 껍질에 등급과 집하장 명, 생산자 번호 및 등급판정 일자표 인쇄하게 된다.

계란등급판정 세부기준(안)을 살펴보자. 계란 등급판정은 크게 중량규격과 품질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중량규격은 기존의 관행적인 계란유통규격인 왕란(70g이상), 특란(60-70미만), 대란(54-60미



만), 중란(47-54미만), 소란(42-47미만), 경란(42미만)의 6개 규격을 왕란(68g이상), 특란(60g이상68g미만), 대란(52g이상60g미만), 중란(44g이상52g미만), 소란(44g미만)으로 5개 규격으로 재정립하였다. 품질등급은 출하농가별 품종 및 산란주령을 고려하여 구성된 룯트를 기준으로 표본추출율에 따라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외관검사, 투광검사, 할란검사를 실시한 후 품질평가기준 급수 구성 비율에 따라 4개등급(1, 2, 3, 4)으로 등급판정을 하게 된다. 세부적인 품질등급을 보면 먼저 외관검사는 난각의 오염상태, 난형, 조직등의 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하고, 둘째 투광검사를 이용하여 투광검사를 한다. 투광검사에서는 기실의 깊이, 난황의 상태, 난백의 상태를 검사한다. 셋째 할란검사는 계란을 평판위에 깨어 난황의 솟음정도, 농후난백의 퍼짐정도, 수양난백의 양, 호우단위(Haugh Unit)를 검사하여 해당 급수를 부여하게 된다. 호우단위는 계란의 무게와 농후난백의 높이를 측정, 산출공식에 대입하여 값을 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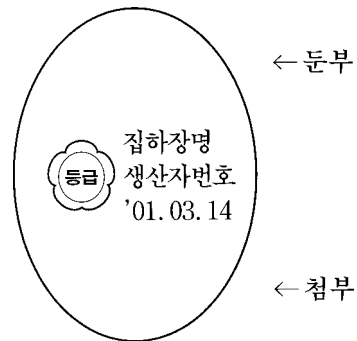
등급의 표시 및 방법을 보면 등급판정이 끝난 후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난각 또는 포장의 살 보이는 곳에 표시하게 하였다. 품질등급의 표시종류로는 1, 2, 3, 4 등급이 있다. 품질등급의 "예"는 아래와 같다.



중량규격 표시종류는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의 5개 규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량규격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중량규격	특란
------	----

난각 표시사항으로는 등급, 집하장 명, 생산자번호, 등급판정일자 등 식용색소로 인쇄하게 되어 있으며, 포장용기에는 등급판정계관집하장 명칭, 주소 및 등급판정일자, 등급판정사 명명, 보관방법에 따른 권장 판매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기준(안)은 농청회(01. 3. 14)자료로 향후 축산물등급판정소 자문위원회(산란계분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